재무감사

감 사 보 고 서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

2019.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국가재정 현황 ····· 2

Ⅲ. 감사결과 ····· 3

1. 감사결과 총괄 ····· 3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 3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4

(1) [외교부] 공무원 재임용자 명예퇴직수당 미환수(**시정**) ····· 5

(2)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주의·통보**) 7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수용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주의**) ····· 10

(4) [관세청] 일반수용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주의**) ····· 13

(5) [새만금개발청]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주의**) ····· 16

(6) [국토교통부] 인건비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18

(7) [국립중앙과학관]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20

(8) [국립수목원]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23

(9) [방위사업청]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26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헌법」제99조,「국가재정법」제60조 등에 따라 매년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등 국가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 결산보고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결산검사 대상인 기획재정부 등 55개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월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2019. 3. 11.부터 같은 해 4. 12.까지(25일간) 기관별 결산보고서(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행하면서 감사인원 23명을 투입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의 질문·답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감사원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19. 5. 9.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국가재정 현황

1. 재정수지

55개 중앙관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결과, [표 1]과 같이 총수입은 465.3조 원, 총지출은 434.1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7.2조 원 증가한 31.2조 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으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1.7%로 0.3%p 개선되었다.

[표 1] 2018회계연도 결산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 원)

구 분	2017년 결산(A)	2018년		증 감	
		예 산(B)	결 산(C)	전년 대비(C-A)	예산 대비(C-B)
총수입	430.6	447.7	**465.3**	34.7	17.6
총지출	406.6	432.7	**434.1**	27.5	1.4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24 (1.4)	15.0 (0.8)	**31.2** **(1.7)**	7.2 (0.3%p)	16.2 (0.9%p)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2. 국가채무

2018회계연도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표 2]와 같이 65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4조 원 증가하고, 예산 대비 15.6조 원 감소하였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6%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다.

[표 2] 2018회계연도 결산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 원)

구 분	2017년 결산(A)	2018년		증 감	
		예 산(B)	결 산(C)	전년 대비(C-A)	예산 대비(C-B)
중앙정부 **(GDP 대비, %)**	**627.4** **(36.3)**	**667.4** **(36.8)**	**651.8** **(36.6)**	**24.4** **(0.3%p)**	**-15.6** **(-0.2%p)**
지방정부(잠정)	32.8	33.1	28.9	-3.9	-4.2
합 계 (D1[주], GDP 대비, %)	660.2 (38.2)	700.5 (38.6)	680.7 (38.2)	20.5 (0.0%p)	-19.8 (-0.4%p)

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잠정치)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에 따라 국가 결산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행하면서 [표 3]과 같이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1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요구와 통보를 하였다.

[표 3] 지적사항 총괄

구 분	합 계	주 의	시 정	통 보
건 수	10	8	1	1

2.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실지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과정에서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직권으로 검토하여 1건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였다.

직권면책에 따른 처리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관련 지적사항(요지)	신청자	처리결과	면책인정 사유
■ 제목: 인건비 예산 무단 이용 ■ 지적요지: 국세청은 탈세제보 관련 신고 포상금 부족(14억여 원)분을 인건비에서 무단 이용하여 집행	직권면책	면책인정 (불문)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이용 대상이 아니지만 「국가재정법」 제47조의 법령상 지출의무 경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규정된 면책요건 충족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가. 명세: 별첨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공무원 재임용자 명예퇴직수당 미환수**

소 관 기 관 외교부

조 치 기 관 외교부

내 용

1. 업무개요

외교부는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 2013. 8. 23. 명예퇴직한 A를 2018. 4. 27. 특임공관장인 주베트남대사로 재임용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2호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제9조의2 제2호 및 제9조의3 관련 [별표 4]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퇴직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퇴직 후 재임용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일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1)]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특임공관장은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해석(2010. 12. 3., 법제처-10-0388)하고 있다.

1) 명예퇴직수당 전액 -[명예퇴직수당 월 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 수/2)]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한 해당 기관의 장은 재임용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환수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외교부는 2013. 8. 23. 기획재정부에서 명예퇴직수당 123,483,260원을 지급받고 퇴직한 A를 2018. 4. 27.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주베트남대사로 재임용하면서 환수대상 명예퇴직수당 46,649,244원[2]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외교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2019. 3. 25. A에게 환수 고지서를 발부하였고, A로부터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46,649,244원을 납입받을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외교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A로부터 명예퇴직수당 미환수액 46,649,24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2)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금액 산출 내역: 123,483,260원 - (1,372,036원 × 56개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관련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계산 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규정 [별표 4]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재임용 후 근무 월수"는 재임용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 월수"는 퇴직일의 다음 달인 2013년 9월부터 재임용이 속하는 달인 2018년 4월까지 56개월임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 치 기 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내 용

1. 업무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한다)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3](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하고 2019년 4월 현재 계 16,743백만 원을 사업출연금으로 출연하였는데 [표]와 같이 월성 등 5개 현장지휘센터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1개(새울) 현장지휘센터는 현재 공사 중이다.

[표] 현장지휘센터 설치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월성	영광	울진	고리	대전	새울	계
출연금	2,500주)	2,600	2,500	3,900	2,500	2,743	16,743
완공연도	2005	2007	2008	2009	2009	’18년 4월부터 추진 중	-

주: 월성 현장지휘센터의 경우 기술원의 자체예산 1,502백만 원 및 사업출연금 998백만 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였는데 기술원의 자체예산도 원안위가 출연한 것이므로 모두 출연금에 해당함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3) 방사능재난 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원자력시설 인접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방사능방재법 제28조에 따라 현장지휘센터는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시설 인접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Ⅵ.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4]에는 사업출연금(350-02목)을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조에는 기술원의 업무를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방사선 방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1항[5] 및 방사능방재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등[6]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현장지휘센터 신축 사업의 경우 원자력 안전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과는 관계가 없고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원안위가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므로 기술원의 고유목적 사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안위는 현장지휘센터 신축 사업을 직접 실시한 후 해당 토지와 건물 등을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장지휘센터 신축 관련 비용을 출연금 예산에 편성하여 기술원에 출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원안위는 2005년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월성 등 6개 현장지휘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모두 16,743백만 원을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하여 기술원에 출연하였고 이 중 공사가 진행 중인 새울 현장지휘센터(사업비: 7,767백만 원,

---

4) 2017년 이후 같은 내용이 매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규정되어 있음(2017년도 이전에는 지침에 사업출연금 대신 출연연구기관 고유의 일반연구사업 등을 특수사업비로 지칭)
5) 원자력 이용 인허가 관련 안전성 심사, 원자력안전 관련 기술 연구개발, 원자력안전 관련 교육 등의 업무
6) 기술원의 정관에도 동일한 사업이 목적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음

사업기간: 2018년 4월~2021년 6월)의 경우 잔여 사업비 5,024백만 원[7]을 향후 출연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원안위는 방사능방재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배하여 기술원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왔고, 월성 등 5개 현장지휘센터의 토지·건물 등이 기술원의 재산으로 등기되었으며 공사 중인 새울 현장지휘센터의 토지 등도 기술원의 재산으로 귀속될 상황에 있다.

관계기관 의견 원안위는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현장지휘센터 신축사업 관련 비용을 출연금 예산에 편성하여 기술원에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이미 설치되었거나 현재 설치 중인 현장지휘센터의 토지와 건물 등을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①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사업출연금을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이미 설치되었거나 현재 설치 중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으로 귀속하는 방안 등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7) 2018년 및 2019년에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된 2,743백만 원은 이미 출연하였고 향후 출연할 사업비는 건축 공사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임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일반수용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 치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용

1. 업무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회계연도와 2018회계연도에 운영비(210목)와 업무추진비(240목) 과목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는 복리후생비(210-12목) 과목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제20조에 따르면 운영비(210목)와 업무추진비(240목)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할 때는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하는 금액이 건당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서운영경비로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 1]과 같이 2017. 11. 9.부터 2018. 11. 2. 사이에 동호회 지원경비(탁구·야구·테니스대회 단체복 등 구입비) 계 22,485,800원(7건)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등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집행하였다.

[표 1] 일반수용비 목적 외 집행 명세

(단위: 원)

관계 부서	지급결의 일자	지급 건명	지급금액	정당 예산과목
미래인재정책국	2017. 11. 9.	장관 탁구대회 단체복 등 구입	2,985,000	복리후생비 (210-12)
	2018. 4. 13.	장관 탁구대회 단체복 등 구입	2,987,000	
방송진흥정책국	2017. 8. 25.	중앙행정기관 야구동호인대회 참가 지원	2,900,000	
	2018. 6. 25.	중앙행정기관 야구동호인대회 참가 지원	1,980,000	
통신정책국	2017. 4. 26.	중앙행정기관 탁구대회 단체복 등 구입	3,388,000	
	2018. 6. 11.	중앙행정기관 테니스대회 단체복 등 구입	4,620,000	
정책기획관	2018. 11. 2.	장관 테니스대회 단체복 등 구입	3,625,800	
합계			22,485,8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8. 9. 27. ‘지식재산의 날’ 행사 오찬비용 8,668,000원을 사업추진비(240-01목)에서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등 [표 2]와 같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료(2건), 사업추진비(1건)와 일반수용비(2건) 계 5건, 40,955,000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다.

[표 2] 관서운영경비 건당 지급한도 초과 집행 명세

(단위: 원)

관계 부서	지급결의 일자	지급 건명	집행 예산과목	지급금액
4차산업혁명 위원회 지원단	2018. 2. 12.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워크숍 행사 관련 호텔 임차료 지급	임차료 (210-07)	6,655,000
	2018. 12. 10.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워크숍 행사 관련 호텔 임차료 지급	임차료 (210-07)	5,154,000
지식재산전략 기획단	2018. 9. 27.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 오찬	사업추진비 (240-01)	8,668,000
정책기획관	2017. 2. 20.	2017년도 미래부 CS센터 대민서비스 위탁용역 관련 조달수수료 지급	일반수용비 (210-01)	5,478,000
	2017. 8. 29.	행정소송 성공보수금	일반수용비 (210-01)	15,000,000
합계				40,955,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앞으로 「국가재정법」 등과 다르게 일반수용비를 예산편성 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관서운영경비로 교부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일반수용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관세청

조 치 기 관 관세청

내 용

1. 업무개요

관세청은 2017회계연도와 2018회계연도에 운영비(210목) 과목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운영비(210목) 중 타 비목 예산에서 복리후생비(210-12목)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및 동호회 지원경비는 복리후생비(210-12목)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제20조에 따르면 운영비(210목)는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하는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서운영경비로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관세청은 [표 1]과 같이 2017년과 2018년에 직원 생일 행사와 동호회 지원경비 계 11,694,790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등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목적 외로 집행하였다.

[표 1] 일반수용비 목적 외 집행 명세

(단위: 원)

관계 부서	연도	지급 건명	집행 예산과목	지급액	정당 예산과목
광주 세관	2018	동호회 물품 구입	일반수용비 (210-01)	417,000	복리후생비 (210-12)
군산 세관	2017	생일 직원 행사 지원 등		1,725,130	
	2018	생일 직원 행사 지원 등		1,098,170	
김포공항 세관	2017	생일 축하행사 지원비		403,070	
여수 세관	2017	생일행사 소모품, 배드민턴 동호회 등 소모품 구입		3,720,180	
	2018	생일행사 소모품, 배드민턴 동호회 등 소모품 구입		2,523,790	
전주 세관	2018	생일 직원 행사 물품 구입		344,900	
천안 세관	2018	생일 직원 행사 물품 구입 등		927,520	
관세국경관리연수원	2018	생일 직원 다과회 물품 구입		535,030	
합계				11,694,790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7. 7.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 인정 약정’ 관련 책자 발간 비용 8,360,000원을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등 [표 2]와 같이 2017. 5. 25.부터 2017. 7. 10. 사이에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수용비(210-01목) 등 계 3건, 22,067,500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다.

[표 2] 관서운영경비 건당 지급한도 초과 집행 명세

(단위: 원)

관계 부서	지급결의 일자	지급 건명	집행 예산과목	지급액	부적정 사유
조사감시국	2017. 5. 25.	일회용 휴대 마약탐지 키트 구입	재료비 (210-11)	6,957,500	500만 원 초과
심사정책국	2017. 7.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 인정 관련 책자 발간 비용	일반수용비 (210-01)	8,360,000	
정보협력국	2017. 7. 10.	제2차 유라시아 무역 원활화 워크숍 세미나 호텔 임차료	임차료 (210-07)	6,750,000	
합계				22,067,500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관세청은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관세청장**은 앞으로 「국가재정법」 등과 다르게 일반수용비를 예산 편성 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관서운영경비로 교부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새만금개발청

조 치 기 관 새만금개발청

내 용

1. 업무개요

새만금개발청은 매년 소관 운영비(210목) 등의 과목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운영비(210목)는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하는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은 2016. 4. 26. 운영비 중 차량 임차료 5,237,960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등 [표]와 같이 2016. 4. 26.부터 2018. 5. 31. 사이에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료 등 총 6건 계 41,639,760원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다르게 관서운영경비로 교부하여 집행하였다.

[표] 관서운영경비 건당 지급한도 초과 집행 명세

(단위: 원)

연번	지급일자	예산과목	지급건명	금액	집행부서
1	2016. 4. 26.	운영비(210목)	유럽지역 투자유치 활동 현지 차량 임차료 추가 지급 요청	5,237,960	신산업전략과
2	2017. 8. 11.		공무 국외출장 경비	7,000,000	사업총괄과
3	2017. 11. 28.		네덜란드 자우더제이 현장방문 현지 차량 임차료	5,050,000	신산업전략과
4	2017. 12. 14.		감정평가 보수료 지급	11,972,400	계획총괄과
5	2018. 5. 23.		두바이 자동차부품 전시회 홍보 기념품 지급	7,260,000	신산업전략과
6	2018. 5. 31.		통역비	5,119,400	기획재정담당관
합계				41,639,760	

자료: 새만금개발청 제출자료

관계기관 의견 새만금개발청은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전 교육과 자체 점검을 통해 예산집행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등과 달리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관서운영경비로 교부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인건비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토교통부

조 치 기 관 국토교통부

내 용

1. 업무개요

국토교통부는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110목)를 집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인건비(110목) 중 타 비목 예산에서 상용임금(110-3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18. 8. 9.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영문에디터 3명과 사무보조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부족하자 국토교통부 본부 인건비(110목) 중 보수(110-01목) 10,000,000원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등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상용임금(110-03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국토교통부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예산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앞으로「국가재정법」등에서 정한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건비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립중앙과학관

조 치 기 관 국립중앙과학관

내 용

1. 업무개요

국립중앙과학관은 2017회계연도와 2018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시험연구비(210-13목)를 집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210-13목)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8]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8) 시험연구비(210-13목)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비목은 일용임금(110-04), 일반수용비(210-01),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피복비(210-03), 임차료(210-07), 유류비(210-08), 시설장비유지비(210-09), 재료비(210-11), 여비(220) 등 9개 경비에 한함

인건비는 시험연구비가 아닌 상용임금(110-03목)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험연구비 예산에서 연구원 등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용임금(110-03목)으로 전용절차를 거친 뒤 집행하여야 했다.

3.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국립중앙과학관은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과학사 등 해당 분야 석사학위자 7명을 기간제연구원으로 채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등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와 같이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23개월간 계 193,600,000원의 인건비를 시험연구비(210-13목)에서 지급하였다.

[표] 시험연구비(210-13목)로 지급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명세

(단위: 개월, 원)

지급 연도	지급 대상자	업무과제명	근로기간	개월 수	지급액	정당 지급 예산과목
2017	B	과학기술자료 조사·정리(어류)	2017. 3. 6.~12. 31.	10	20,000,000	상용임금 (110-03목)
	C	과학기술자료 조사·정리(이공학)	2017. 2. 1.~12. 31.	11	22,000,000	
	D	과학기술자료 조사·정리(보존처리)	2017. 2. 1.~12. 31.	11	20,900,000	
	E	과학기술자료 조사·정리(생물전반)	2017. 2. 1.~12. 31.	11	20,900,000	
	F	과학기술자료 조사·정리(과학기술사)	2017. 2. 1.~12. 31.	11	19,800,000	
	G	과학기술자료 조사·정리(곤충)	2017. 2. 1.~12. 31.	23	22,000,000	
2018	G	과학기술자료 조사·정리	2018. 1. 1.~12. 31.		24,000,000	
	B	과학기술자료 조사·정리	2018. 1. 1.~12. 31	12	24,000,000	
	H	과학기술자료 조사정리(이공학)	2018. 3. 8.~12. 31.	10	20,000,000	
합계	7명(중복되는 근로자 2명 제외)				193,600,000	

자료: 국립중앙과학관 제출자료

관계기관 의견 국립중앙과학관은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예산집행 업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앞으로 「국가재정법」 등에서 정한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험연구비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예산이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립수목원

조 치 기 관 국립수목원

내 용

1. 업무개요

국립수목원은 2016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험연구비(210-13목)를 집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210-13목)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9]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국립수목원은 2018년에 '산림행정지원 프로그램(7000항)-국립수목원

9) 시험연구비(210-13목)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비목은 일용임금(110-04), 일반수용비(210-01),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피복비(210-03), 임차료(210-07), 유류비(210-08), 시설장비유지비(210-09), 재료비(210-11), 여비(220) 등 9개 경비에 한함

기본경비 단위사업(7018)-국립수목원 기본경비 세부사업(250)-관서업무추진비(240-02목)'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체육대회 회식비 등의 행사 경비 15,096,890원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산림자원보호 프로그램(1900항)-산림생물종연구 단위사업(1935)-산림생물종연구 세부사업(300)-시험연구비(210-13목)'로 집행하는 등 [표]와 같이 시험연구비 계 223,729,220원을 체육행사 등 시험연구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하였다.

[표] 시험연구비 목적 외 집행 명세

(단위: 원)

회계연도	집행내역	집행 예산과목	정당 예산과목	지출금액
2016	체육대회	산림생물종연구 - 시험연구비 (210-13목)	국립수목원 기본경비-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22,194,880
	기관홍보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여비(220목)	5,248,760
	시무식, 기념식 등 기관 일반행사		국립수목원 기본경비-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등	8,818,170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 기관 기본운영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여비(220목)	7,500,820
	소계			43,762,630
2017	체육대회	산림생물종연구 - 시험연구비 (210-13목)	국립수목원 기본경비-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11,926,240
	기관홍보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여비(220목) 등	6,193,150
	시무식, 기념식 등 기관 일반행사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여비(220목) 등	32,191,520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 기관 기본운영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여비(220목) 등	30,214,590
	소계			80,525,500
2018	체육대회	산림생물종연구 - 시험연구비 (210-13목)	국립수목원 기본경비-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15,096,890
	기관홍보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여비(220목) 등	8,352,450
	시무식, 기념식 등 기관 일반행사		국립수목원 기본경비-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등	18,292,450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 기관 기본운영		국립수목원 기본경비-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등	57,699,300
	소계			99,441,090
합계				223,729,220

자료: 국립수목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국립수목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시험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 시험연구비를 예산이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방위사업청

조 치 기 관 방위사업청

내 용

1. 업무개요

방위사업청은 2017회계연도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를 집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비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건축설비, 비품 등의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는 공사비(420-03목)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를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공사비(420-03

목)로 집행하고자 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등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표]와 같이 2017. 3. 24.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면서 공사비(420-03목)로 집행하여야 할 사무자동화기기의 전기배선공사 사업비 189,768,860원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집행하는 등 총 249,616,510원의 공사비(420-03목)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집행하였다.

[표] 공사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한 명세

(단위: 원)

연도	집행 예산과목	집행 내역	지출금액	정당 예산과목
2017	시설장비유지비 (210-09목)	청사 이전 관련 사무자동화기기 전기배선공사	189,768,860	공사비 (420-03목)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	13,178,000	
2018		화장실 개선공사	27,115,650	
		조직개편을 위한 격벽공사	19,554,000	
합계			249,616,510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방위사업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대규모 보수 등에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가 아닌 공사비(420-03목)로 집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 시설장비유지비를 공사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